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기대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159호
- 다. 발의일자: 2021. 2. 4.
- 라. 회부일자: 2021. 2. 9.

### 2. 제 안 사 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내용 통보기간의 산정과 소위원회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15662호, '18.6.12.개정, 법률 제16617호, '19.11.26.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제도 운영 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일부 조문에 수정 반영함  
(안 제2조, 제19조제5항).

- 나. 평가업자 신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다.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안 제15조제1항).
- 라.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3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내용 통보기간과 소위원회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 기준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제3호사목과 아목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19조제5항 역시 동일 사유로 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조례 제11조는 평가업자가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을 서울시 소재 평가업체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임.

그러나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주소지’ 요건을 삭제하여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평가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편익도모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5조제1항은 현재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기간 계산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sup>1)</sup>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불산입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보완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23조에는 소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위원회 운영에 혼선의 여지가 있는 바, 안 제23조제4항은 소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을 효율적인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의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2. (생략)

3. 공휴일 및 토요일